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

2024. 5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한 국 거 래 소
예 탁 결 제 원
금 융 투 자 협 회
넥 스트 트 레 이 드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자본법령상 ATS 제도 주요내용	2
III. ATS 운영방안	3
1.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4
2. KRX+ATS 통합 시장관리	7
3. 자본시장 제도 정비	9
IV. 추진계획	10
[참고] ATS 해외사례	11

I. 추진배경

- '25년 ATS 출범에 따라,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
 - '13.5월 자본법 개정에 따라 거래소 허가제와 ATS가 도입되었으나, 10년간 인·허가 신청 없이 한국거래소(KRX) 단일시장 체제 지속*
 - * '01~'05년 ECN증권이 야간단일가매매를 운영하였으나, 가격변동이 제한되어 거래가 부진해 영업 종료
 - 지난해 7월 '넥스트레이드'가 최초로 ATS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금년 하반기 본인가를 거쳐 '25.上 영업을 개시할 계획
- 해외 주요국은 이미 ATS가 정착*되어, 증시 인프라 개선을 촉진
 - * [美] 65개사, 점유율 11% / [EU] 142개사, 점유율 18% / [日] 3개사, 점유율 11%
 - (거래시간) 미국·일본에서는 야간시장을 운영하는 ATS가 1개사씩 등장해, 증권 거래시간을 대폭 확대*
 - * 예) 일본ATS Japannext : 주간거래(08:20~16:00) + 야간거래(16:30~06:00)
미국ATS Blue Ocean : 야간거래(20:00~04:00) 전용 ATS
 - (주문다양화) ATS가 다양한 주문 호가를 제공*해, 거래편의 증진
 - * 예) 유럽ATS Turquoise 등은 중간가 호가 등 다양한 호가 방식 제공
- 본격적인 복수시장 체제를 도입·운영하게 되는 만큼, 증권 거래 혁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준비* 필요
 - * 법령상 ATS제도를 기반으로 KRX규정 개정, ATS업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i) 기존 단일시장 체제와 차별화된 새로운 증권 거래 서비스 제공
 - ii) 복수시장으로의 시장 유동성 분산 등에 대비하여 통합시장 차원의 시장관리·감독 및 투자자 보호 방안 정비
 - iii) ATS 출범에 따른 자본시장법규 보완 추진

➔ ATS 출범이 시장 간 건전한 경쟁과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TS 운영방안」 마련

II. 자본법령상 ATS 제도 주요내용

- (개요)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증권의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투자매매·중개업, 인가제) [法 §8의2⑤]
 - '13.8월, 단일 증권시장 체제 해소 및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
- (매매체결대상) KRX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 [승 §7의3①*]
 - * 이 외에도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증권 중 총리령으로 추가 허용 가능하나, 현재는 없음
 - ATS는 **유동성이 높은 800여개 코스피·코스닥 종목** 거래 예정
- (시장점유율) ATS에서 경쟁매매로 체결되는 거래량을 **시장전체 기준 15%, 종목별 30%**로 제한* [승 §7의3②]
 - * ATS 도입시 시장전체 5%, 종목별 10%였으나 ATS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년 완화
- (업무기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매매체결 수행 [法 §78·승 §78]
 - ATS의 업무기준은 **KRX 운영규정·세칙과 유사한 내용 규정***
 - * 매매체결 상품, ATS 거래 참가자(증권사), 매매정지·해제, 매매체결·청산·결제, 거래 참가자의 주문 수탁, 발행인 정보 공시, 시장점유율 제한 준수방법 등 → 단, 거래정지·해제, 가격변동폭 등은 거래소 규정에 따라야 함
 - ATS는 업무기준 제·개정시 **금융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하며, **금융위의 변경 요구** 가능 (KRX규정은 금융위 의결 필요)
- (최선집행의무) 증권사는 가격·수량·수수료·체결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선집행기준을 마련, 투자자 주문 집행**(양 시장 중 택일) [法 §68]
- (청산·결제 등) ATS도 지정 거래소(KRX)가 **청산, 전자등록기관**(예탁원)이 **결제, 시장감시위원회(KRX)가 시장 감시** 수행 [法 §78]

➔ 법령상 ATS제도를 바탕으로, 거래시간·방법·시장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구체화하여 ATS업무기준 등에 반영할 필요

Ⅲ. ATS 운영방안 [案]

[기본방향]

편의
증진

1. ATS출범을 통한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투자자
보호

2. KRX + ATS
통합 시장관리

3. ATS에 적합하도록
자본시장 제도 추가 정비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발전

ATS
운영
방안

1.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1) 거래시간 확대 : 하루 12시간, 오전 8시~오후 8시 거래

(2) 새로운 호가 도입 : 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3) 기타 서비스 개선 : 대량·바스켓매매 활용도 확대
수수료 인하, 주문전송·체결속도 개선

2. KRX + ATS 통합 시장관리

(1) 최선집행의무 : 가이드라인 마련(총금액 및 체결가능성 우선),
증권사 주문 자동집행 전산시스템(SOR) 구축

(2) 공매도 관리 : ATS Pre마켓·After마켓 공매도 금지 등

(3) 시장관리·감시·청산·결제 : ATS도 KRX와 동일 수준 운영

3. 자본시장 제도 정비

(1) ATS 거래대상 : 상장ETF·ETN 거래 허용(추가 인가취득 필요)

(2) 제도 정비 : 공개매수, 전문인력 요건 등 법규 보완

1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 하루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 새로운 호가 도입, 수수료 인하 등 증권거래 인프라·서비스의 혁신 도모

(1) 거래시간 확대

※ 현행 거래시간(시간외거래 제외) 09:00~15:30(6시간 30분)

접속 매매	09:00~15:20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로 매매를 즉시체결
단일가 매매	시가 08:30~09:00 종가 15:20~15:30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
공시시간	07:30~18:00	당일 공시사항, 익일 공시사항, 조회 공시

◆ 하루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 → 거래시간 5시간30분 ↑

- (거래시간) ATS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 거래
[(Pre)8~9시+(정규)9시~15시반+(After)15시반~20시 / 거래소 세칙·ATS 업무기준]
 - (시가) KRX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에도 ATS는 즉시 매매체결
 - 단, 시세조종 방지를 위해 시가 결정 전 10분간(08:50~09:00) ATS Pre마켓을 일시 중단, 동 시간에만 KRX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
 - * [현행] 시가 단일가 매매 중 08:40~09:00에는 접수된 호가 바탕으로 예상체결가 표출
 - (종가) KRX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ATS거래를 일시 중단
하되, 현행 10분(15:20~15:30) → 5분(15:25~15:30)으로 단축
 - KRX 종가는 펀드 기준가격 산출 등에 활용되는 만큼, 종가에 모든 시장 유동성을 집중
- (호가제한) 유동성이 낮은 Pre마켓·After마켓은 지정가 호가만 허용*해, 가격 급변 방지 [ATS 업무기준]
 - * 시장가호가 등 가격 변동폭을 확대할 수 있는 호가는 모두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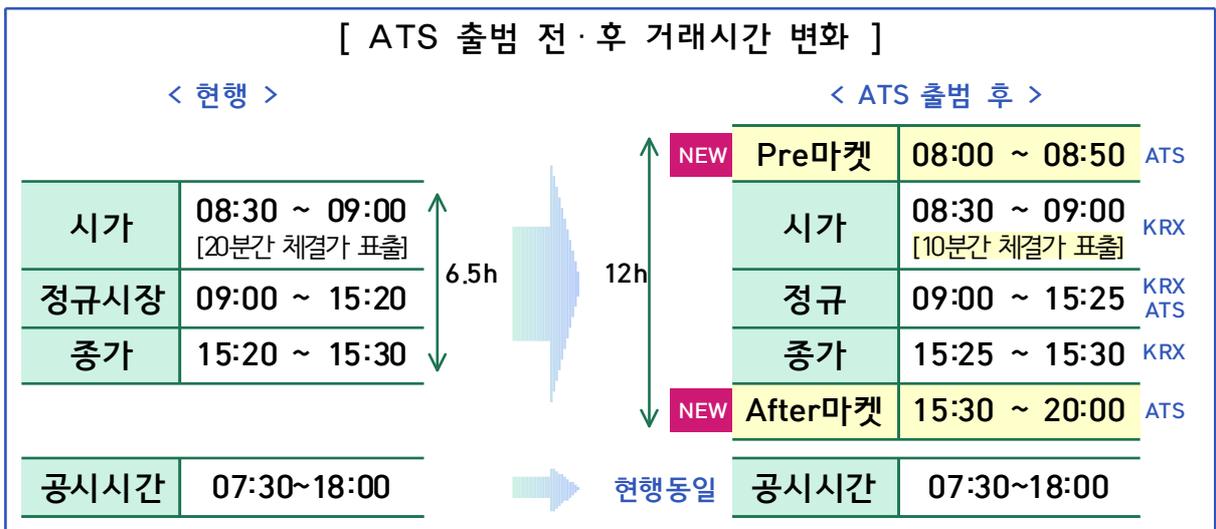
③ (공시·시장조치 시간) **현행 공시 접수시간(07:30~18:00)**은 **유지***하고, **익일 적용되는 시장조치***는 **ATS 거래종료 후인 20시 공표**

* 당일 공시사항은 대부분 영업시간 중 발생, 공시시간 연장시 올빼미공시 우려

** 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투자자 유의종목·관리종목 지정 등

- 단, 공시마감 이후 **거래정지 사유***가 **보도될 경우 ATS가 After마켓거래만 임의 정지**(익일 공시 시점에 정식 거래정지) [ATS 업무기준]

* 예) 회생·파산, 부도, 은행거래정지, 감사의견 부적절·거절·범위제한한정 등



[2] 새로운 호가 도입

◆ **ATS·KRX 모두 중간가호가·스톱지정가호가를 도입해 거래편의 증진**

① (중간가호가)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 도입** [거래소 규정·ATS 업무기준]

* 예) 최우선 매도호가 10,100원, 최우선 매수호가 10,000원 → 중간가호가 10,050원
 최우선 매도호가 10,080원으로 하락시 → 중간가호가 10,040원으로 자동 조정

- **매매체결 가능성이 높으면서 가격이 유리하도록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호가를 낼 수 있고, 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효과***

* 중간가호가의 주문수량과 예상중간가격을 표출하여 투자자에게 호가 정보 제공

② (스톱지정가호가) 시장 가격이 투자자가 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을 내는 **스톱지정가호가 도입** [거래소 규정·ATS 업무기준]

* 예) 현재가 12,000원 → 시장가격이 13,000원 도달시, 13,500 지정가 매수

○ 시장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손절매·분할매수** 등에 활용 가능

즉시 체결되는 시장가 호가, 가격을 지정하는 지정가 호가	➔	개선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를 활용해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 가능
---------------------------------	---	--

(3) 기타 서비스 개선

◆ ATS의 대량·바스켓매매 요건을 단순화·완화하여 활용도 확대

※ 현행 대량·바스켓매매

-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별종목 대량매매(블록딜) 또는 바스켓 매매를 매수·매도자 간 합치된 가격(상대매매)으로 거래하는 장내매매로, 체결정보는 공개됨

	거래시간	가격범위	대량매매 기준	바스켓매매 기준
정규	09:00~15:30	당일 장중 최고~최저가격	[코스피 5천주 or 1억원 ↑ 코스닥 5천만원 ↑	[코스피 5종목 & 10억원 ↑ 코스닥 5종목 & 2억원 ↑
시간 외	08:00~09:00 15:40~18:00	당일 가격제한폭		

- 1] (종목) 코스피·코스닥 소종목에 대해 ATS 대량바스켓매매 허용 [ATS 업무기준]
- 2] (시간·가격) KRX와 동일한 08:00~18:00에 대량바스켓매매 허용, 거래시간 구분 없이 가격제한폭* 내 상대매매 [ATS 업무기준]
* ATS는 KRX와 달리 특수관계인간 대량·바스켓매매 양도차익에 증여세가 부과
- 3] (거래량기준) ATS는 5천만원 / 5종목&2억원 예정 [ATS 업무기준]

◆ 그 외에도 ATS는 수수료 인하, 주문전송·매매체결속도 개선 등 예정

- 1] (수수료) ATS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KRX 대비 20~40% 인하할 계획으로, 투자자 수수료 부담 절감 기대
- 2] (인프라 개선) 신규 전산설비 구축 및 증권사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대비 주문전송 및 매매체결속도 개선 노력

2 KRX+ATS 통합 시장관리

■ 최선집행의무 본격 이행, 통합시장 차원에서 시장·공매도 관리

[1] 최선집행의무

※ 최선집행의무(法 §68):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마련·공표하고, 이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여야 하는 의무

* ①가격, ②수수료 및 비용, ③주문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을 고려

◆ 투자자 보호·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SOR 마련

① (가이드라인) 투자자 보호 및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선집행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

- ① (투자자지시) 투자자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가장 우선하여 집행
- ② (Taker) 즉시 체결 주문(예: 시장가)은 가격·수량·거래비용을 감안, 총금액(매수총비용, 매도총대가)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집행

* 예) 900주 시장가 매수 주문시 (ATS 수수료가 KRX보다 낮은 경우)

→ ATS 191,000원 600주, 191,100 100주 / KRX 191,000 200주 체결

KRX	ATS	가격	ATS	KRX
400	400 → 300	191,100		
200	600	191,000		
		190,900	600	500

- ③ (Maker) 즉시 체결되지 않고 대기해야 하는 주문(예: 지정가)은 체결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집행(호가잔량·스프레드 등을 고려)

② (SOR) 증권사가 전산시스템(SOR: Smart Order Routing)을 구축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실시간 자동 집행

[2] 공매도 관리

◆ 정규시간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ATS도 공매도규제(업틱룰 등) 적용

① (정규외시간)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가격이 급변할 위험이 있는 Pre·After마켓은 공매도 불가 [9시~15시25분만 공매도 / ATS 업무기준]

② (공매도표시*) 증권사가 ATS에 공매도임을 표시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ATS가 거래소에 공매도 보고내역 전송 [승개정]

* 증권사는 거래소에 공매도임을 알리는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 가능(승 §208)

③ (업틱룰*) KRX/ATS 각 시장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적용
[ATS 업무기준]

* 공매도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직전체결가 이하 공매도 주문 금지

** KRX·ATS 시세를 비교해 높은가격 기준으로 할 경우 비교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도 각 시장을 기준으로 업틱룰 적용 중

④ (공매도과열종목*) KRX+ATS 전체 공매도 주문량 및 KRX 가격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과열종목은 ATS도 공매도 금지 [거래소 세칙]

* 주가하락·공매도 급증 종목(예: 주가 Δ 3%, 공매도 비중 30%)의 익일 공매도를 금지하고, 금지일 주가하락이 5% 이상시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3) 시장관리 · 감시 · 청산 · 결제

◆ KRX와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청산·결제 적용

① (가격변동폭) ATS 가격변동폭은 KRX 前日 증가 기준 \pm 30%
[Pre·After마켓도 동일한 가격변동폭 적용 / ATS 업무기준]

② (시장안정) 시장조치(거래정지, 썬더브레이크, 사이드카 등)는 KRX를 기준으로 하며, ATS에도 실시간 적용 [ATS 업무기준]

○ 단, 개별 종목의 일시적 가격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VI)*는 ATS 자체적으로 KRX와 동일 기준으로 운영

* 특정 호가에 의해 잠정체결가격 급변시 2분간 단일가매매(KRX)/거래정지(ATS)

③ (시장감시·청산) KRX가 ATS의 시장감시 및 청산을 수행

④ (결제) ATS 거래도 T+2일 결제 [Pre·After마켓도 T+2일로 동일]

3 자본시장 제도 정비

▣ ATS의 ETF·ETN 거래를 허용하고, 공개매수 등 자본법령 정비

(1) ATS 거래대상

◆ ATS 매매체결대상 확대 : 상장주식 → 상장주식 + 상장ETF·ETN

① (ETF·ETN) 상장 ETF·ETN도 고유동성 종목이 다수 있고 거래 수요가 높은 만큼, ATS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規則개정]

② (인가신설) ETF LP 관리 등 관련 사업계획 심사가 필요하므로 인가단위를 신설^{*}, 既ATS 인가 사업자도 추가 인가 필요 [승개정]

* ETF·ETN 매매체결을 위한 ATS 자기자본 요건은 100억원 수준으로 정할 예정

(2) 공개매수 등 제도정비

◆ 공개매수 제도, 인력요건 등을 ATS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① (공개매수^{*}) ATS도 상장증권의 장내시장에 해당하는 만큼, KRX와 동일하게 ATS도 5% 공개매수가 적용되지 않도록 정비 [法개정]

* 5%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매수 조건·방법·목적 등을 사전에 신고·공고 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외에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

② (전문인력) 인력 요건이 실질적으로 ATS에 기여하는 자가 되도록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 → 매매체결전문인력^{*}으로 변경 [規개정]

* 국내·외 거래소·ATS·협회에서 시장운영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국내·외 증권사에서 주문 접수·전달·집행 또는 확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기타규정) 최선집행의무^[法]·NCR^[規] 등^{*} ATS에 부적합한 규제를 배제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法]}이 ATS 청산에 활용됨을 명확화

* ATS는 법상 투자중개업자로, 규정상 최선집행의무·NCR 규제 등이 적용됨

** 결제 불이행시 손해 배상을 위해 증권사가 거래소에 적립한 기금(약 5천억원)

IV. 추진계획

- (법규개정) 시행령·규정·거래소 규정 등은 '24.하반기 내 개정, 공개매수 등 관련 자본법도 연내 개정 추진
- (시스템·본인가) 5.9일 세미나 후 KRX·ATS·증권사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본격화, ATS는 '24.4분기 본인가 신청 후 '25년 상반기 출범

[과제별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1.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1-1) 거래시간 확대	ATS, 증권사	ATS 업무기준 반영, 시스템 구축	'25.상
(1-2) 시·종가 단일가 개편	ATS KRX	ATS 업무기준 반영, 거래소 세칙 개정, 시스템 개편	'25.상
(2) 새로운 호가 도입	ATS KRX	ATS 업무기준 반영, 시스템 구축, 거래소 규정 개정	'25.상
(3) 기타 서비스 개선	ATS	ATS 업무기준 반영, 시스템 구축	'25.상
2. KRX + ATS 통합 시장관리			
(1-1)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24.2Q
(1-2) SOR 구축	증권사	시스템 구축	'24.4Q
(2-1) Pre·After마켓 공매도 금지	ATS	ATS 업무기준 반영	'25.상
(2-2) 공매도 표시의무 개선	금융위	자본법 시행령 개정	'24.4Q
(2-3) ATS 업틱룰 적용	ATS	ATS 업무기준 반영	'25.상
(2-4) 공매도 과열종목 적용	KRX	거래소 세칙 개정	'24.4Q
(3) ATS 시장안정장치 도입 등	ATS KSD	ATS 업무기준 반영, 결제시스템 구축 등	'25.상
3. 자본시장 제도 정비			
(1) ATS 거래대상 확대	금융위	자본법 시행령·규칙 개정	'24.4Q
(2-1) 공개매수 의무 정비	금융위	자본법 개정	'24.4Q
(2-2) ATS 전문인력 요건 정비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4.4Q
(2-3) 최선집행의무 ATS 배제	금융위	자본법 개정	'24.4Q
(2-3) NCR 규제 ATS 배제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4.4Q
(2-5) 손해배상 공동기금 활용	금융위	자본법 개정 및 거래소규정 개정	'24.4Q

1. 개요

- 주요국은 현재 정규거래소 외 1개 이상의 ATS를 운영 중이며, ATS의 시장점유율(거래금액 기준)은 11~19% 수준

미국	EU	일본	호주
정규거래소 24개 ATS 65개	정규거래소 127개 ATS 142개	정규거래소 1개 ATS 3개	정규거래소 1개 ATS 1개

2. 미국

- (개요) 증권이 매수자와 매도자를 모으는 시장·시설 등을 제공하는 자로, 브로커·딜러의 일종
 - 거래 가능한 증권이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제한 없음
 - 다만, 주로 상장주식(NYSE·NASDAQ) 매매체결을 수행하며 비상장 증권 거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연혁) '75년 증권거래 고정수수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수료 차별화를 추구하는 ATS가 등장
 - '05년 최선집행의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ATS 성장 본격화
- (다크풀) 야간시장 운영 목적의 Blue Ocean ATS를 제외하면 모두 호가 정보가 비공개되는 다크풀* 중심으로, 기관투자자 위주 시장

* Lit Pool : 호가정보와 체결정보가 공개되는 매매체결 시스템

Dark Pool : 호가정보와 체결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익명 매매체결 시스템

→ Lit Pool 중심 ATS는 대부분 정규거래소로 既 전환

- **(거래시간)** 아시아권의 美주식 투자 수요를 타겟으로 한 **Blue Ocean ATS**가 야간시장(20시~04시) 운영
 - 이 외의 ATS는 정규거래소와 동일 시간(09:30~16:00)에만 거래
- **(최선집행)** 브로커·딜러는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문을 처리할 의무** [국내와 동일]
 - 투자자 지시가 가장 우선하며, 지시가 없을 경우 **가격 우선원칙**
 - 브로커·딜러는 **최선집행 절차**와 주문을 집행중인 **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평가**를 실시
- **(주문보호의무)** 거래소·ATS는 상장주식의 **공개 지정가 호가** 접수시, **더 유리한 호가가 있는 시장으로 주문을 회송할 의무**
 - 브로커·딜러(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만을 두고 있는 국내 및 다른 해외 주요국(EU·일본·호주 등)과 달리, **미국에만 있는 제도**
 - 실무적으로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자동으로 주문 회송**

3. EU

- **(개요)** 거래소(Regulated Market) 외 금융투자상품 유통 플랫폼으로 MTF, OTF, SI를 두고 있으며, **MTF가 국내 ATS에 해당**
 - * 1)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비재량적 방식으로 다자간 매매체결 수행
 - 2)OTF(Organised Trading Facility): 비재량적 방식으로 주식外 다자간 매매체결 수행
 - 3)SI(Systematic Internalizer): 재량적 방식으로 양자간매매·자기계정거래 수행
- **거래 가능한 상품이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제한 없음**
- **(연혁)** '07년 MiFID(금융상품투자지침)가 제정되면서 **정규거래소 집중 의무제가 폐지되어, ATS 발전**
- **(유형)** MTF에서 **Lit Pool** 주문과 **Dark Pool** 주문이 **모두 가능**
- **(거래시간)** MTF는 모두 **정규거래소와 동일** 시간에만 거래 中

- **(최선집행)** 증권사는 **가격, 비용, 속도, 체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간에 **매매주문을 배분**
 - **개인·일반투자자(retail)의 주문**은 투자자가 지불할 **총 대가** (가격 + 수수료)가 집행의 **우선적 고려요소**
 - 투자자로 하여금 **특정한 지시**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금지**
 -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4. 일본

- **(개요)** 국내 ATS와 가장 유사한 PTS(Proprietary Trading System) 제도
 - 당초 **상장주식·채권만** 거래가능했으나, **'23년 금융상품거래법**이 개정되어 **비상장주식·투자신탁·토큰증권** 거래도 **가능**
 - * 단, 일본의 경우 비상장주식·토큰증권은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으로, PTS도 해당 증권은 전문투자자 간 매매체결만 가능
- **(연혁)** '98년 **거래소 집중의무를 폐지**하고, **PTS 인가단위를 신설**
 - 2000년대초 10개의 PTS가 설립되었으나, **다수의 PTS가 폐업**하고 **현재 3개사**(Japannext, Cboe Japan, ODX) **영업 중**
- **(거래시간)** Japannext ATS가 **야간시장(16시30분~06시)** 운영

동경거래소	Japannext	Cboe Japan	ODX
09:00 ~ 15:00	08:20 ~ 16:00 16:30 ~ 06:00	08:00 ~ 16:00	08:20 ~ 16:00

- **(최선집행)**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매매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의 **이유**를 **공시**할 의무
 - '24.1월부터 **개인투자자**의 경우 **가격 우선 원칙**이 적용되어, 거래소-PTS 간 **가격 비교**를 통해 **주문 집행**